

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1992.1.1 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일반행정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1. 7.11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1. 7.19. 회부
라. 상정일자 :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7.2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완기)

가. 제안이유

-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중·고등학교 재학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주어 구·동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을 하는데 있음.
-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있음.
- 내부부 지방기획과에서 '91.6.27 일자로 전국 시·도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고, 경기도에서도 '91.7.1 일자로 진시·군에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, 본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음.

나. 주요골자

- 통장자녀 장학생추천 및 선발·지급정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.
-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10 %이내에서 15 %이내로 지급범위를 확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15 %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으로 할 수는 없는가?	현재 10 %인데 15 %로 늘리고 차후 예산이 허락하면 검토 상정하겠음.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, 이유, 골자

해당없음

6. 심사결과
원안가결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일반행정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1. 7.11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1. 7.19. 회부
라. 상정일자 :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7.2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주남)

가. 제안이유

- 지적법 시행규칙이 '91. 2. 1.일자로 내무령 제 522 호로 개정됨에 따라, 수수료 인상에 따른 "400 원권", "700 원권 2, 수입증지 신설

나. 주요골자

- 증지의 종류중 300 원권 다음에 400 원권, 500 원권 다음에 700 원권 신설.
- 증지의 종류중 400 원권, 700 원권 신설에 따라 별지 제 3,4,5,6 호 서식 변경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액면을 300, 700으로만 해야 하는지 일반원권등 교액권은 불가능한지.	○전국 공통사항임.
○ 300 원을 1,000 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.	○전국 공통사항임.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 요지·이유 골자

시행일은 92.1.1.일부터

6. 심사결과

수정안 가결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(증지의 종류·규격 및 모양) 제 1 항중 “300원권” 다음에 “400원권”을, “500원권” 다음에 “700원권”을 삽입한다.

제 16 조(증지취급 및 배수) 제 1 항중 “별지 제 3 호 서식”을 “별지 1”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중 “별지 제 4 호 서식”을 “별지 2”와 같이 한다.

제 27 조(장부비치 및 검사) 제 1 항중 “별지 제 6 호 서식”을 “별지 3”과 같이 한다.

제 28 조(출납정리)중 “별지 제 5 호 서식”을 “별지 4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. 1. 1 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: 1991. 7. 11.

나. 제안자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: 1991. 7. 19. 회부

라. 상정일자: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 7. 20) 회부

제 2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 7. 22)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세정과장 박주남)

가. 제안이유

세정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시점(과년도)이 현재는 전년도 회계년도말로 되어 있으나, 이것을 전년도 회계년도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기준시점을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포상금 지급 범위가 현재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을, 회계년도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.
- 창발적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의 삭제
- 1 건당 징수액이 200 원 이상 2,000 원 미만에 대하여는 포상금 100 원을 지급하였고, 2,000 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, 개정 조례에

는 획일적으로 전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.

-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 지급규정 삭제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는?	○ 기획실 소관의 부천시 조례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함.
○ 민간인에게 포상책정이 공무원의 독식을 위한 이시스트가 될 가능성 여부 및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 될지 여부와 세수증대에 오히려 부작용(축소) 우려는?	○ 그럴리는 없으며 주민 위화감 발생은 있을지 의문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임.
○ 90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및	○ 2,434천원
○ 90년 이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	○ 4,064천원
○ 91년 예산액은?	○ 17,820천원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 요지

-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,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금 지급 규정 존치
- 민간인에 지급할 포상금의 동장 신청 규정 삭제

6. 심사결과

수정안 가결

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호,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

1.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
(변정직, 기능직,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 다)
2.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